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백인호의원외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435호, 2007.5.17)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4)됨에 따라 조례근거의 관련조항을 변경

○ 2007.10.31일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군의원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결정·통보해 옴에 따라 그 지급액을 정함과 동시에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변경(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경우 지급월의 임기가 1월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제4조)

다. 2008년도 의원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을 98만원에서 154만원으로 함(안 제4조)

라.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준칙을 신설함(안 제 9조)

마. 기타 자구 및 오탈자 정정 등

3. 개 정 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사항 : 예산부서와 합의함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으로, “성주군 의회”를 “성주군의회”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중 “보존”을 “보전”으로, “의정 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성주군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정수당지급)제1항중 “98만원”을 “154만원”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중 “의원의”를 “의원이”로, “여행하는”을 “여행할”로 한다.

제7조(여비의 종류)제2항중 “(항공운임·자동차운임)”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한다.

제9조(준칙)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성주군의회**……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보전**……**의정활동비를**……. ②……**성주군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98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월정수당지급) ①……**154만원을**…… **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②……
제5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삭제 <2006.5.19>	제5조(회기수당 지급기준) (현행과 같음)
제6조(여비지급)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 **의원이**…… **여행할** …….
제7조(여비의 종류) ①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7조(여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국외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

현행	개정안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신설>	**제9조(준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